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서윤기 의원 외 14명

나. 의안번호 : 제2839호

다. 제출일자 : 2021. 10. 15.

라. 회부일자 : 2021. 10. 20.

2.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내 교육공간 확보,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25. ~ 2021. 11. 0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 수정 가결[1)]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학교시설은 별도 용도 구분 없이 '기타 건축물'에 해당되어 최고한도는 400m^2당 1대로 일괄 적용하고 있기에, 학교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치기준을 따로 정하는데 동의함

○ 다만,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학교의 주차특성을 반영하여 설치한도

---

1) 주차계획과-12035(21.10.28.)

를 정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규정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부설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주차장법」(이하 "법") 제19조제1항[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10항[3]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오히려 교통 혼잡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

2)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는 바에 따라 그 설치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국토교통부령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4]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 해당 조례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및 최고한도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이에 현행 조례 제21조제2항[5] 및 〔별표 3〕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를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타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물들의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를 서울시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 시설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별첨 참조〕

○ 따라서 현행 조례 〔별표 3〕에 따라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 시설은 기타 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최

---

4)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이하 "주차장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 1. 별표3 비고 제1호에서 정한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서 전철역, 지하철역과 환승센터 또는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 ② 주차장설치제한지역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고 한도는 시설면적 400㎡당 1대로 일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 등에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최고한도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부설주차장 설치 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된다 할 것임

○ 다만, 관련 법[6]에서는 부설주차장을 포함하는 주차장 관리 등과 관련된 권한을 자치단체에게 위임하고 있어 서울시 조례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를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재위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7]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

6)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지방자치법」 제121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8] 등에 따라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법률자문 결과 학교 부설주차장은 교육자치법 제20조제11호[9]에 따라 교육·학예 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의 범위에서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서울시교육청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별 첨]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 설 물	최고한도
1.위락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22㎡당 1대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200㎡당 1대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68㎡당 1대
5.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6대 골프연습장 : 타석당 0.6대 옥외 수영장 : 정원 2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67인당 1대
6.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466㎡당 1대
7. 창고시설	시설면적 534㎡당 1대
8.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400㎡당 1대**